

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빨 의 자 : 노광기 의원

2. 빨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빨의일자 : 2011년 3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1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조례제정 이후 불 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면서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위원 중 임명공무원 규정(관계공무원 → 보건복지국장)(안 제2조)
- 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조정(4년 → 2년)(안 제4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조례 문장의 명사구 등 뛰어 쓰기, 쉽고 간결한 문장
 - 명확한 문장,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정비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동기

- 지난 '97년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직관련 일부 내용만 변경 되었을 뿐 현실에 불 부합한 내용을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위원의 임기 조정(4년 → 2년)

-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임
- 이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(93개)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운영의 생산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2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, 다른 시·도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운영하고 있음.
⇒ 따라서,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.

다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이후 불 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,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